

# 대&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



## 1. 목적

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「대&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」을 준용하여 당사와 협력회사간 계약체결에 있어 협력회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회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며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2. 계약체결방식 및 계약방식 선택 기준

2.1 당사는 공급시장의 상황을 분석하여 아래의 2가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

- 1) 수의 계약 방식
- 2) 지명 경쟁 입찰 방식

2.2 하기 3항의 수의계약 방식 이외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실행한다.

2.3 수의계약 방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행할 수 있다.

- 1)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여유가 없는 경우
- 2) 특허취득, 실용신안 등록,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위탁 또는 구매하는 경우
- 3) 고객이 지정한 회사가 있거나, 해당 물품의 공급회사가 단일회사인 경우
- 4) 적극적인 기술협조나 경쟁력있는 사전 견적 제시로 당사의 수주에 현저히 기여한 회사
- 5) 기존 거래실적이 있는 품목일 경우

## 3. 협력관계 운영 구축

당사는 협력관계 운영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관계 관리가 아닌 신규회사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회사 관리를 통해 당사와 협력회사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## 4. 계약체결 준수사항

당사는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각 호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 한다.

4.1 서면의 사전발급

- 1)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 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.
- 2)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조건,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 한다.
- 3)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

정산서를 교부 한다.

- 4)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 한다.
- 5)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 한다.

#### 4.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

- 1) 단가는 수량, 품질, 사양, 납기, 대금지급방법, 재료가격,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한다.
- 2)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(30일 연장 가능)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.
- 3)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,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.
- 4)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,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, 거래업체 규모,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 한다.
- 5) 단가변경의 사유(물가, 원자재 가격, 환율 변화 등), 협의기간,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 한다.

#### 4.3 명확한 납기

- 1)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한다.
- 2)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며,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.
- 3) 거래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한 거래업체의 손해를 배상한다.

#### 4.4 객관적 검사기준

- 1)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.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.
- 2)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 하며,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.
- 3)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 한다.
- 4) 당사는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.

#### 4.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

- 1)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(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,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)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.
- 2)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한다.
- 3) 제조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을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,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

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

- 4)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 한다.
- 5)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(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)내의 어음을 교부 한다.
- 6)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, 어음을 교부한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(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률)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 한다.
- 7)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 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한다.
- 8)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 한다.
- 9)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 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한다.
- 10)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한다.

#### 4.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

하자원인 규명 주체, 하자원인의 종류,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 처리 한다.

#### 4.7 계약 해제 . 해지

- 1) 다음의 경우는 최고 없이 계약 해제·해지가 가능하다.
  - (1)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,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.
  - (2) 해산, 영업의 양도 또는 타 기업으로의 합병을 결의,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
- 2) 다음의 경우에는 1개월의 최고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·해지가 가능하다.
  - (1)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
  - (2)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- (3)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(4) 거래업체의 기술,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### 5. 계약체결시 금지사항

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 한다.

### 5.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

- 1)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,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.
- 2)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
- 3) 구두위탁(발주)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, 하도급대금, 위탁일시 등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
- 4) 구두위탁(발주)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(계약담당임원 등 당사 계약 책임자)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
- 5)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
- 6)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
- 7)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(서류)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(서류)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
- 8) 입찰내역서, 낙찰자 결정품의서,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

### 5.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

- 1)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2)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3)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,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4)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5)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6)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7)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8) 대금지급조건, 거래수량,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
- 9)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,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10)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,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11)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,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
- 12)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

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

- 13) 수출, 할인특별판매, 경품류,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
### 5.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

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

### 5.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

- 1)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·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
- 2)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·계약 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
- 3) 거래업체의 생산품목·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
- 4)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

### 5.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

- 1)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바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
- 2)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
- 3)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, 어음할인료,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
- 4)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

### 5.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

- 1)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, 의견교환,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
- 2)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
- 3)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,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

### 5.7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

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(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)

### 5.8 부당특약 행위

- 1) 공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
- 2)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비용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
- 3) 당사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,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
- 4)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

## 6.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

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 한다.

### 6.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

신의성실의 원칙, 하도급법,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 한다.

### 6.2 단가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

원자재 가격하락,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 한다.

### 6.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

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 한다.

## 7. 계약이행시 금지사항

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 한다.

### 7.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

- 1)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·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- 2) 발주자·외국수입업자·고객의 클레임,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- 3)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·공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- 4)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
- 5)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- 6)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- 7)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 하는 행위
- 8)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, 발주자 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
### 7.2 부당 반품 행위

- 1)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
- 2)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
- 3)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
- 4)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
- 5)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·외국수입업자·고객의 클레임,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
- 6)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
- 7) 거래업체의 납기, 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리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, 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

### 7.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

- 1)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,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2)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3)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4)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
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
- 5) 제조,수리,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 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
- 6)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7)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8)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 노무비, 일반관리비, 이윤,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
- 9)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,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
- 10)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
- 11)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,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
- 12)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13)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14)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
### 7.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

- 1)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, 장려금,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
- 2)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, 장려금,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
- 3)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, 장려금,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

#### 7.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

자사의 임금상승,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

#### 7.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

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

#### 7.7 보복 조치 행위

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

#### 7.8 탈법 행위

- 1)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
- 2)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
- 3) 어음할인료·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

#### 7.9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

- 1)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,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
- 2)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·장비를 구입·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"
- 3)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,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

#### 7.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

- 1)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,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
- 2)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, 자기가 구입·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

#### 7.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

- 1)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  - (1)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
  - (2)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
  - (3)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
- 2)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